

서울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01776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법률상 관리인

A

원고 보조참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추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2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가합594253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E 주식회사에게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관한 3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A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한 후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의 구소는 취하되었고,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2013. 7. 1. 원고 보조참가인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2019. 6. 11. 신용보증한도 42억 7,500만 원, 보증기간 2016. 6. 23.부터 2020. 6. 22.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수출보증약정’이라고 한다). F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소송상 지위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A은 이 사건 수출보증약정 당시 F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또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는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7. 1. 중소기업은행과 계정과목 무역어음대출, 여신한도금액 50억 원, 여신만료일 2014. 6. 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은 2019. 6. 13. 여신만료일 2020. 6. 22.까지로 최종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다. F는 2019. 10.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9. 10.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80호).

F는 위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11. 27.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수출보증약정에 따라 F의 대출원리금 4,236,477,060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비용 261,500원을 지출하였다(대위변제액과 채권보전비용의 합계액은 4,236,738,560원이고, 이는 제1심이 인용한 A의 채무원금과 같다).
라. 피고와 그 남편인 A은 2017. 12. 20.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12. 20.부터 2019. 12. 19.까지,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A은 2019. 4. 19.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2 지분액에 상당하는 3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마. A은 2020. 5. 8.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20. 6.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로서 그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065호), 관리인의 지위에서 2020. 12. 29.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나.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2019. 4. 19.)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수출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수출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F 및 A에 대한 사전구상금 또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2019. 10. 8.)만에 F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만에 원고 보조참가인의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 보조참가인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점, ② F는 2019. 10. 8. 회생절차 신청을 하였는데, 2019년 8월 말경 기준 F의 자산은 약 804.1억 원이고, 부채는 약 1,097.1억 원이며, 2019년 8월까지 약 36.1억 원의 당기순손실 상태에 있었고, 2019년 12월까지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약 463억 원에 달하였던 점, ③ F의 대표이사인 A은 이 사건 수출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채무자인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곧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 또한 2020. 5. 8.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2020. 6. 9. 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065호), 피고는 A의 처이자 E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A이 2019. 4. 19.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을 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채무자인 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채권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인 2021. 3. 18.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E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채권양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F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A이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전구상금 또는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다만 2017. 12. 20. A의 재산상속 관련 제반 비용으로 2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상환 명목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증여받은 것뿐으로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룬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과 피고는 2006. 2. 23.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씩을 매수하였는데, 2017. 12. 20.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이를 각 매도한 사실, ② A과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인 2017. 12. 20. E로부터 임대차기간 2017. 12. 20.부터 2019. 12. 19.까지,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③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19. E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A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A의 처이자 E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이재신, 판사 김영현